

포상심사위원회규정



사단
법인 **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**

(사)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포상심사위원회 규정

제 1 조 본 규정은 포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상심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은 가능하다.

제 3 조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 4 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포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5 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중요 의결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.

제 6 조 포상심사에 필요한 경우 포상대상자에게 보충자료 및 업적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7 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8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